

라. 기능 조정 및 정원 재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변경(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  
 기상청의 관측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신규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으로 재배정된 지방기상청 인력 4명(8급 2명, 9급 2명) 및 기상장비 첨단화에 따라 단순 관측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기상청 정원에서 감축되는 인력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

마.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변경(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기상청 인력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함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 <환경부 제공>

##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로 한다.

제45조의 제목“(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을“(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3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을“(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를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을“(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30으로”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터넷을 통한”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인터넷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고용보험산재보험란 중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를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를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을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의 ⑫란 다음에 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의 청구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의 ⑦란 다음에 ⑧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⑦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각각 고용촉진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및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원금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6개월로 하는 등 지원금 제도 개선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 대신 재직증명서 등 일정 기간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